



[번역]

2006년 9월 15일

이메일 및 국제우편 경유

우편번호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김종민 수석조사역 귀하

필요자기자본부담 경감을 위한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

저희는 일괄청산에 관련된 규정 특히 신용위험관리 목적상 필요자기자본부담 경감(이하 “자본부담경감”)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바, 금감원의 현재 입장을 좀더 잘 이해하려는 뜻에서 국제스왑과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ISDA”)를 대표하여 귀원에 본 서신을 송부하는 바입니다.

배경

귀원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ISDA는 사적(私的)으로 협상되는 파생상품거래 업계의 참여자들을 대표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회원사 수로 볼 때 최대 규모인 글로벌 금융거래협회입니다. ISDA는 1985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한국”)에 소재한 8개의 국내 회원사를 포함하여 6 대륙 50개국에 걸쳐 725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ISDA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금감원을 방문하였고 금감원과 건설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ISDA는 한국 내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 규정

현재 다수의 아시아 규제당국들은 자본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 규정을 검토 중입니다. 금년 초,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 및 홍콩 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HKMA”)은 자문보고서를 발표하여 자본부담경감을 위하여 일괄청산을 인정하는 규정 변경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ISDA는 이에 양 통화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6월 MAS는 은행이 자본부담경감을 구하는 요건을 명시한 Notice 638을 발표하였습니다. MAS가 명시한 자본부담경감 요건은 바젤 위원회(Basel Committee)가 명시한 요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HKMA는 현재 요건 개정을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ISDA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자문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규제당국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MAS 및 HKMA와 함께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AS 및 HKMA가 취한 접근방식은 영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상기 언급한 국가들에 관한 자료 및 귀원이 관심을 가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자료를 귀원에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ISDA's Legal Opinion

파생상품업무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는데 ISDA Master Agreement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ISDA Master Agreement 중 상계조항의 집행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ISDA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저희가 노력한 결과, 다수의 국가에서 일련의 법률이 통과되어 동 국가에서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ISDA는 1987년 Master Agreement, 1992년 Master Agreement 및 2002년 Master Agreement 중 해지, 양당사자간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bilateral close-out netting) 및 다지점간 상계(multibranch netting) 조항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하는 법률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ISDA Credit Support Documents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법률의견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ISDA의 법률의견서는 한국 등 49개의 관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SDA의 법률의견서는 바젤위원회가 자본규제 목적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를 승인한 이후 바젤위원회의 법률의견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ISDA 법률의견서는 여러 중앙은행의 요청에 맞추어 매년 갱신됩니다. 또한 현지 법률고문에게 신용 파생상품, 지금(bullion) 거래, 낄씨 파생상품 등 추가적인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법률의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가에서 ISDA 회원사들은 이러한 법률의견서에 근거하여 현행 법률 및 규율구조를 분석하고 특정 국가에서 자본부담경감 목적상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에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 규정

저희는 금감원이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와 관련한 자본부담경감 요건을 명시한 일반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의 적용에 있어 업계에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관련된 추가정보와 해당 사안이 전세계 국가별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귀원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주요 당국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금감원과 논의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이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 규정과 관련하여 업계에 자본부담경감에 대한 자문보고서나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금감원이 제안하는 여하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자문에 기꺼이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동 사안에 대한 추후 논의에 기꺼이 응하고자 합니다. 만일 본 서신에 약술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동경에 있는 Ms. Tricia Bowden (전화: (813) 6437 1717)나 싱가포르에 있는 Ms. Angela Papesch 또는 Mr. Way Yee Bay (전화: (65) 6538 3879)에게 연락하시거나 (65) 6538 6942로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Tricia Bowden

ISDA 아태지역

법률 및 규제위원회 의장

Angela Papesch

정책담당이사 겸

아태지역 사무소장